

부천클러스터 대외활동 작가풀 구성 및 운영 지침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부천클러스터 대외활동 작가풀(홍보만화 및 디지털캐릭터 제작, 강사)을 구성하여 추천 의뢰에 따른 효율적인 작가 추천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이라 한다)이 운영기관 및 작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부천클러스터 대외활동”이라 함은 홍보만화제작, 디지털캐릭터, 온라인 강사 등 일자리창출, 만화문화수혜자 확대 및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함을 말한다.
2. “작가”라 함은 만화관련 작가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작가역량이 우수한 작가로서 진흥원 입주자 작가풀에 선정된 작가(강사)를 말하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에 파견 및 제작을 진행한다.
3. “운영기관”이라 함은 진흥원에 추천 요청을 신청하여 온라인강의, 홍보만화제작, 디지털캐릭터를 의뢰하는 기관, 단체, 학교 등을 말한다.

제4조(진흥원의 역할) 진흥원은 작가(강사) 추천 및 부천클러스터 대외활동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문작가(강사) 모집, 선정 및 관련 업무
2. 운영지침 및 방법 안내
3.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 2 장 작가(강사) 운영관리

제5조(자격요건) ① 작가(강사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방문강사 등 만화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
2.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시설에 입주한 자
3. 만화작화 또는 스토리 제작 등 만화관련 경력자
4. 디지털캐릭터 제작 관련 경력자

제6조(선정) ① 진흥원은 작가(강사)풀로 모집된 작가(강사)를 선정하고, 매년 상/하반기 각 1회씩 활동이력을 관리한다.

② 작가(강사)의 활동기간은 제외사유 발생 시 까지로 하며,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재모집 할 수 있다.

③ 진흥원은 신규입주자 대상으로 입주자 작가(강사)풀 모집 안내를 진행하며, 신청한 입주자에 한하여 선정한다. 활동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한다.

제7조(선정의 제외)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가(강사)에 대해 입주자 작가(강사)풀에서 해당 작가(강사)를 제외할 수 있다.

1.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시설을 퇴실하였을 경우
2. 본인이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
3. 교육 진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보안자료 등을 임의로 유출하였을 경우
4. 교육생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 혹은 물리적 위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
5. 교육수혜자에게 금품, 향응, 접대 등을 받았을 경우
6. 기타 진흥원의 명예 및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

제8조(선정의 취소) 진흥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작가(강사)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원 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경우
2.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범죄 전과의 확인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

제9조(활동중단) ① 작가(강사)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활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, 중단 30일 이전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강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활동 재개 14일 전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강의비 및 제작비용 지급) ① 운영기관은 강사 파견현황을 기준으로 강의비를 산정하여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강사에게 지급한다. 단, 운영기관 관리 규정에 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.

② 부천시의 요청에 의한 홍보만화 및 디지털캐리커처는 제작완료 후 조속히 지급한다.

제11조(비밀의 준수) 작가(강사)는 본 운영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운영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,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육운영 점검)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 및 작가(강사)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한다.

② 진흥원은 작가(강사)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, 이를 운영관리에 반영하고 작가(강사)의 소속감 및 책임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온라인 강사의 의무) ① 강사는 만화교육의 전문강사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
② 강사는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, 운영기관과의 사전연락을 통해 교육 일정을 조율하여 교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③ 강사는 교육수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법,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또는 신원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강사는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변경사항 발생 시 진흥원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, 진흥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4조 (강의내용의 책임) ① 본 사업의 강의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강사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② 본 사업의 강의내용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, 명예훼손 또는 기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진흥원에게 제기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청구에 대하여 강사는 진흥원을 면책시키고, 진흥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.

신청자 확인 : (인)